

# COOL

## 원산지 라벨 표시 공급자 정보



### COOL이란?

COOL(Country of Origin Labeling, 원산지 라벨 표시)은 판매자가 "적용 대상 물품"이라고 부르는 특정 식품이 생산된 위치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는 라벨 표시 법입니다.

### COOL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소매점에 적용 대상 물품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공급자는 판매자와 차후 구매자에게 COOL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전상품을 취급하는 식료품점, 슈퍼마켓, 창고형 매장 등 1930년의 PACA(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ies Act)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COOL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COOL에서 제외되는 대상

호텔, 레스토랑, 바, 선술집, 식품점, 샐러드 바, 농산물 직판장 또는 이와 유사한 즉석 섭취 식품을 제공하는 기관은 COOL 요구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 공급자의 책임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적용 대상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판매자가 COOL을 준수할 수 있도록 판매자(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구매자)에게 정확한 원산지와 생산 방법 정보(해당하는 경우)를 제공해야 합니다. 원산지와 생산 방법 정보는 제품 자체, 주요 컨테이너 또는 소매 판매 시 제품에 동반되는 문서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기록 관리 요구 사항

수입업체, 재배자, 유통업체, 처리업체, 포장업체, 가공업체와 같은 공급자는 COOL의 기록 관리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공급자는 거래 날짜로부터 1년간 적용 대상 물품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공급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급자가 물품을 구입한 사람과 공급자가 물품을 판매한 사람을 기록해야 합니다.

- COOL 정보는 제품 자체, 주요 배송 컨테이너 또는 소매 판매 시 제품에 동반되는 문서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에 사용되었으며 알아보기 쉽게 작성된 기록은 출력된 자료 또는 전자 형식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기록은 어느 위치에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 USDA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COOL 적용 대상 물품이란?

적용 대상 물품은 판매 시점에 COOL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 물품입니다. 여기에는 과일 및 야채, 양식/자연산 어류 및 조개류, 닭 살코기 및 같은 닭고기, 양고기, 염소 고기 제품, 땅콩, 피칸, 마카다미아 너트, 인삼이 포함됩니다.

(뒷면에서 계속)

**제외 물품이란?**

가공 식품은 COOL 요구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가공 식품은 적용 대상 물품에서 파생된 품목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1. 특성을 변화시키는 특정한 공정을 거침(예: 조리, 염지, 훈연, 재구성) 또는
2. 다른 적용 대상 물품 또는 실질적인 음식 요소와 결합됨

가공 식품의 예:

- 데리야키 맛 닭고기
- 볶은 땅콩
- 빵가루를 묻힌 치킨 텐더
- 피시 핑거
- 해시 브라운
- 참치 통조림
- 혼합 채소
- 아루굴라와 어린 시금치 믹스
- 샐러드 키트
- 양념 마늘 새우

**라벨 표시 요구 사항**

**살코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2016년도 옴니버스 지출법 (Omnibus Spending Act)은 쇠고기, 돼지고기 살코기, 간 돼지고기에 대한 필수 COOL 요구 사항을 폐지하여 1946년의 농업 마케팅법을 개정했습니다. 닭고기, 양고기, 염소 고기에 대한 요구 사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 미국산 살코기 닭, 양, 염소고기 제품의 경우 라벨은 "미국에서 출생/부화, 사육, 도살/수확됨"이라고 표시되어야 합니다.

-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생산 단계를 거친 동물의 고기는 판매 시점에 생산 단계에 관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라벨에는 "X 국가에서 출생, 미국에서 사육 및 수확" 또는 "X 국가에서 출생 및 사육, 미국에서 도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수입 육류의 원산지 신고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확인합니다. 모든 생산 단계가 미국 바깥에서 일어나 소매 판매 시점에 생산 단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라벨에 "X 국가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간 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간 고기 제품에 대한 COOL 요구 사항에 따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국가를 나열해야 합니다. 특정 원산지의 원재료가 60일 이내로 가공업자의 재고에 있었던 경우 해당 국가는 원산지일 수 있으므로 원산지로 표기해야 합니다.

**부패성 농산품: 과일, 야채, 땅콩, 피칸, 마카다미아 너트, 인삼**

- 원산지 신고는 제품이 수확된 위치를 나타냅니다.
- 주, 지역 또는 특수한 현지 지명은 부패성 농산품의 원산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류 및 조개류**

어류 및 조개류는 판매 시 원산지과 생산 방법(양식 또는 자연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 미국산은 미국에서 부화, 사육, 수확, 가공된 양식 어류와 조개류 또는 미국 내 수원에서 수확하거나 미국 국적 선박이 수확하고 미국에서 가공된 그리고 미국 외부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거치지 않은 자연산 어류 및 조개류를 의미합니다.
- 미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거친 수입 어류 또는 조개류는 "X 국가산, 미국에서 가공" 또는 "X 및 미국 제품"으로 라벨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거치지 않은 수입 어류나 조개류에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신고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COOL 규정 준수**

1. 먼저, COOL 부서는 매년 소매점에 수천 번의 소매 감시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시 USDA 담당자는 다음을 확인합니다.
  - 판매 시 적용 물품에 원산지와 생산 방법 라벨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원산지와 생산 방법 신고는 판매자의 기록 관리 자료를 근거로 평가했을 때 정확해야 합니다.
2. 두 번째로, COOL 부서는 판매 감시 심사 기간에 수집한 기록에 근거하여 공급업체를 역추적 감사합니다. 그러므로써 상업망을 통해 원산지와 생산 방법 증명의 정확도를 판단합니다. 적용 대상 물품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공급자는 정보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감사를 받습니다.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Fair Trade Practices Program, Country of Origin Labeling Division  
 1400 Independence Ave., SW; Room 2614-S, STOP 0216 ; Washington, DC  
 20250 전화번호: (202) 720-4486, 팩스: (202) 260-8369